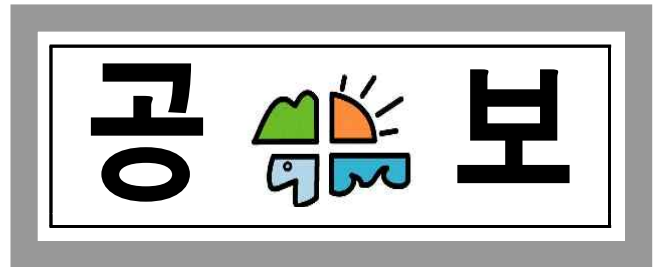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10호 2021년 2월 10일(수)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6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32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9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1
-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 공고 14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5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16

입법예고

-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8
-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고시 제2021-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가 시행하는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외 73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사업면적 - 당 초 : 36,048.00㎡ - 변 경 : 36,052.00㎡ ○ 대지면적 : 27,023.00㎡ ○ 건축연면적 : 92,286.16㎡ ○ 건설규모 : 아파트 2/16~29층 6개동 578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195,817,789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9.11.01. ~ 2022.05.01.(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 1>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일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37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48	증) 4	36,052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	37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48	36,052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36,048	증) 4	36,052	100.0	
주거지역	소계	35,084	증) 4	35,088	9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4	증) 4	35,088	97.3	
녹지지역	소계	964	—	964	2.7	
	생산녹지지역	532	—	532	1.5	
	자연녹지지역	432	—	432	1.2	

2.1.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8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변경없음)

3.1.1.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6	737 (2,719)	8,847 (32,078)	1	54 (257)	546 (3,338)	2	249 (642)	2,257 (6,065)	2	434 (1,820)	6,044 (22,675)
중로	3	440 (1,899)	6,162 (23,860)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4 (22,675)
소로	3	297 (820)	2,685 (8,218)	1	54 (257)	546 (3,338)	2	243 (563)	2,139 (4,880)	-	-	-

- ※ 1) () 안 숫자는 중로 2-25호선, 중로 3-33호선, 소로 1-21호선, 소로2-16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
 2) 중로 2-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79m 중 6m / 총 면적 1,185㎡ 중 118㎡)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3)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1,510m 중 124m / 총 면적 18,447㎡ 중 1,816㎡)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4) 소로 1-21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총 연장 257m 중 54m / 총 면적 3,338㎡ 중 546㎡)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존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
 5) 소로 2-163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총 연장 353m 중 33m / 총 면적 3,009㎡ 중 268㎡)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존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

3.1.2.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보조 간선도로	6 (79)	조양69전 중로3-6	조양79도 대로3-1	일반도로	청초천	2007. 11. 2 (강고 제2007-236호)	
기정	중로	3	6	12~15	보조 간선도로	124 (1,510)	조양547-2도 중로1-8	노학1268도 중로1-23	일반도로	청초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3	33	12~18	보조 간선도로	310	조양387-2임 소로2-231	조양400-5도 중로3-6	일반도로	속초상업 고등학교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54 (257)	조양510-21도 중로3-6	조양462전 소로2-163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기정	소로	2	231	8.5	국지도로	210	조양460-1도 소로1-21	조양387-2임 중로3-33	일반도로		2019. 6. 20 (속고 제2019-57호)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33 (353)	조양581-2도 대로1-1	조양497-2전 소로1-21	일반도로		1993. 4. 28 (속고 제93-11호)	

- ※ 1)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
 2)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존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후	
가구번호와 동일	A1	27,023	조양동 415번지 일원	27,023	-	27,023	공동주택용지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78	증) 4	182	근린생활시설용지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결정내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형 태		
		색 채		
-	A2 (신규)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 가구의 건축 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	
		형 태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제외	결정도 참조
-	A2 (신규)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 가구의 건축 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	
		형 태		
		색 채		
-		건 축 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5.1.1.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및 주차	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

속초시고시 제2021-13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1-12호(2021.2.10.)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19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7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48	증) 4	36,05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신설	37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48	36,052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6,048	증) 4	36,052	100.0	
주거지역	소계	35,084	증) 4	35,088	9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4	증) 4	35,088	97.3	
녹지지역	소계	964	-	964	2.7	
	생산녹지지역	532	-	532	1.5	
	자연녹지지역	432	-	432	1.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8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변경	6	737 (2,719)	8,847 (32,078)	1	54 (257)	546 (3,338)	2	249 (642)	2,257 (6,065)	2	434 (1,820)	6,044 (22,675)
중로	변경	3	440 (1,899)	6,162 (23,860)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4 (22,675)
소로	변경	3	297 (820)	2,685 (8,218)	1	54 (257)	546 (3,338)	2	243 (563)	2,139 (4,880)	-	-	-

※ 1) () 안 숫자는 중로 2-25호선, 중로 3-33호선, 소로 1-21호선, 소로 2-16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

- 2) 중로 2-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79m 중 6m / 총 면적 1,185㎡ 중 118㎡)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3)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1,510m 중 124m / 총 면적 18,447㎡ 중 1,816㎡)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4) 소로 1-21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총 연장 257m 중 54m / 총 면적 3,338㎡ 중 546㎡)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
- 5) 소로 2-163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총 연장 353m 중 33m / 총 면적 3,009㎡ 중 268㎡)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 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보조 간선도로	6 (79)	조양69전 중로3-6	조양79도 대로3-1	일반도로	청초천	2007. 11. 2 (강고 제2007-236호)	
기정	중로	3	6	12~15	보조 간선도로	124 (1,510)	조양547-2도 중로1-8	노학1268도 중로1-23	일반도로	청초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3	33	12~18	보조 간선도로	310	조양387-2임 소로2-231	조양400-5도 중로3-6	일반도로	속초상업 고등학교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54 (257)	조양510-21도 중로3-6	조양462전 소로2-163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기정	소로	2	231	8.5	국지도로	210	조양460-1도 소로1-21	조양387-2임 중로3-33	일반도로		2019. 6. 20 (속고 제2019-57호)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33 (353)	조양581-2도 대로1-1	조양497-2전 소로1-21	일반도로		1993 .4. 28 (속고 제93-11호)	

※ 1)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

2)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초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가구번호와 동일	A1	27,023	조양동 415번지 일원	27,023	-	27,023	공동주택용지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78	증) 4	182	근린생활시설용지

5)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결정내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제외	결정도 참조
-	A2 (신규)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 가구의 건축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32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3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노학동 87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32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3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속초시장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구 모				사용 형태	기능	기점	종점	전체연장 (m)	금회연장 (m)	기개설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전체	소로	2	23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중1-9 노학1308-1도	광3-2 노학924-8 대	135	135	-	2020.05.22. (속초시고시 제2020-72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1. 8.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2. 10. ~ 2021. 2. 24.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시	동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178	1,107					
1	속초	노학	876-3	도	853	4	공	속초시			
2	속초	노학	1308-5	도	512	1	국	국토교통부			
3	속초	노학	875-3	천	164	1	공	속초시			
4	속초	노학	876-5	천	231	67	공	속초시			
5	속초	노학	1308-1	도	129	33	국	국토해양부			
6	속초	노학	878-1	천	693	31	공	속초시			
7	속초	노학	879-10	임	243	243	공	속초시			
8	속초	노학	1265-174	잡	145	145	공	강원도			
9	속초	노학	1265-175	과	162	162	하*원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7, ***동, ***호(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	속초	노학	1265-172	도	139	139	국	국토해양부			
11	속초	노학	1314	도	508	15	국	국토해양부			
12	속초	노학	924-21	대	186	186	공	속초시			
13	속초	노학	924-23	대	77	77	공	속초시			
14	속초	노학	924-18	도	136	3	국	국토해양부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속초시 노학동	1265-1 74	앵두나무	10년생	4	주						
			개봉송아	10년생	1	주						
2	속초시 노학동	924-21	사과나무	10년생	2	주	김*국	강원도 속초시 척산양지말길 3*				
3	속초시 노학동	924-23	대추나무	10년생	1	주	김*국	강원도 속초시 척산양지말길 3*				
			창고	목재 및 함석	1(6㎡)	동						
			비닐하우스	철 재파이프	1(9㎡)	동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장사동 4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당초) **㈜코코에스디** 대표 김정곤
(변경) 대신자산신탁(주) 대표 김철중
 - 주소: (당초) 속초시 미시령로 3437, 속초 이편한세상 상가 101호(금호동)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665m	-	B=10m, L=440m	
	소로1-87호선	B=10m, L=180m	-	B=10m, L=158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1. 2. 28.**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24.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2. 10. ~ 2021. 2. 24.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440m	5,345㎡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1-87호선	B=10m, L=158m	2,26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1	장사동	431-11	임	40	—	33	33	이*옥	
2	“	431-3	임	250	—	21	21	이*옥	
3	“	산280-1	임	2,380	19	17	36	속초시	
4	“	431-2	철	3	3	—	3	국(국토해양부)	
5	“	431-1	전	400	14	25	39	국(기획재정부)	
6	“	431-4	임	23	—	17	17	한*경	
7	“	432-1	전	3,088	—	2	2	한*경	
8	“	산280-8	철	166	97	43	140	한*경	
9	“	437-6	철	310	145	68	213	한*경	
10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11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해양부)	
12	“	437-2	철	362	—	106	106	국(기획재정부)	당초
								대신자산신탁(주)	변경
13	“	437-9	철	115	—	62	62	국(기획재정부)	
14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해양부)	
15	“	437-12	철	390	—	191	191	국(기획재정부)	
16	“	437-24	철	785	644	8	652	국(국토교통부)	
17	“	437-5	철	1,520	772	312	1,084	국(국토해양부)	
18	“	517-37	도	872	55	—	55	국(국토해양부)	
19	“	산268-1	철	275	12	—	12	국(국토교통부)	
계				13,658	4,440	905	5,345		

■ 지장물조서(소로1-23호선)

일련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432-1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166.9	한*경	영랑동 131-2*	
2	“	산275-2	창고	콘테이너	4.3	(주)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철제조립식	24.0	(주)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3	“	457-2	간판	철재	0.1	김*복	속초시 사진용촌길 4* (장사동)	

■ 토지조서(소로1-8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1	장사동	517-37	도	872	285	12	297	국(국토해양부)	
2	“	457-3	대	408	9	28	37	홍*경	
3	“	457-5	답	352	36	10	46	최*성 외 1인	
4	“	455-3	원	1,021	676	40	716	국(기획재정부)	
5	“	산313-1	유	887,397	50	—	50	국(국토해양부)	
6	“	429-16	임	54	22	—	22	국(국토해양부)	
7	“	453-4	원	3,176	12	—	12	주식회사신세계 영랑호리조트	
8	“	산268-1	철	275	41	11	52	국(국토교통부)	
9	“	산268-2	임	7,644	520	218	738	정*성	
10	“	산268-4	임	496	75	15	90	안*수	
11	“	456	전	754	188	18	206	안*수	
계				899,911	1,914	352	2,266		

■ 지장물조서(소로1-87호선)

일련 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산268-2	창고	목재	5.8	정*성	광진구 구의동 631-*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또는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재등록	노학동장인 노학동인증기전용2호		2.4×2.4cm	2021. 2. 10.	
폐기	노학동장인 노학동인증기전용2호		2.4×2.4cm	2021. 2. 10. (2005. 10. 2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10. ~ 2021. 2. 24.(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행위자 (관리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김복○	교동 966번지	불법 증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주소 불명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 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639-277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2. 9.

속 초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① 2. 공고기간: 2021. 02. 10. ~ 2021. 02. 24.

② 3. 공고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관리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김영○	교동 690-14번지	불법 증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주소 불명
박난○	교동 804-149번지	불법 증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주소 불명
김익○	교동654-133번지	불법 증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주소 불명

6. 유의사항

◦ 귀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출처 : 속초시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기 : 강원도

- 행정소송 제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행강제금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속초시 건축과(☎033-639-2774)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2021. 02. 09.

속 초 시 장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2. 6. ~ 2021. 2. 1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2.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안 제6조)

라. 통학버스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보육직원 및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 2) 조례안 예고 :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사항
3. 재난 및 통합버스 안전 지도·점검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
6.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제 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지원) 시장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 3 ~ 6. 생략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 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⑤ 영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관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속초시명장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에 대하여 서식을 개선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장 증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숙련기술과 업체명 기재 추가, 서식 크기 변경(A4 → B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연락처 : 033-639-2350 (FAX 033-639-24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033-639-2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속초시 명장

직종(숙련기술)

업체명 성 명

귀하는 숙련기술자 영예인 속초시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